

(제6-6-2호)

소송 등의 판결·결정

1. 사건의 명칭	주식대금청구의 소
2. 원고·신청인	주식회사 위OOOOOOOO 외 3명
3. 판결·결정내용	원고패
4. 판결·결정사유	원고들의 주의적,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5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24-11-13
7. 확인일자	2024-11-13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해당사항 없음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의 판결·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판결·결정사유”는 소송의 포기·취하·인낙·화해, 판결, 결정, 명령,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.
- 주3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·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
2024년 11월 14일

하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준 기 (인)

